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17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등 운영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6명(손범구, 황국주, 박정환, 박종길, 박왕규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11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17.)

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,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(안 제4조 ~ 제5조)
- 정원, 직종의 분류, 채용 및 결격사유(안 제6조 ~ 제9조)
- 복무의무 및 보수, 휴직 등, 전보(안 제10조 ~ 제16조)
- 교육훈련, 정년, 퇴직급여(안 제17조 ~ 제19조)
- 산업안전, 재해보상, 차별적 처우의 금지(안 제20조 ~ 제22조)
- 고충처리, 표창 및 징계, 규정(안 제23조 ~ 제26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
 - 「근로기준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, 조례의 목적과 정규직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한 용어의 정의, 구 본청·보건소·동·의회사무국 근무자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, 구청장의 책무 및 「근로기준법」·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·「달서구 공무원 단체협약」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.
-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정원·직종·채용·복무·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휴직·4대 사회보험 가입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 후생복지, 노동조합·교육훈련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정년 준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,
- 안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는 산업안전·재해보상·차별금지·고충처리·표창·징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 안 제2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- 2017년 고용노동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정규직 전환 및 「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표준안」에 따른 ‘무기계약직’이라는 명칭의 ‘공무직’ 명칭 변경과 함께,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검토 결과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최근 3년간 달서구 공무직 인원 현황]

2020. 12.	2021. 12.	2022. 10.
325명	331명	346명

※ 청소과 환경공무직 180명 포함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